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3. 5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3. 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3.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중면)

가. 제안이유

○ 임차료 상한과 관련 농지법 제25조 폐지와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농경지가 감소되어 농지관리 위원수를 조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촌지도소 폐지와 중동신시가지 도시화로 농경지 감소에 따라 원미구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15 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미구는 농지가 없습니까? ○ 위원수를 15인 → 10인으로 줄이는 이유는? ○ 위원은 농사짓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됩니까? ○ 조합장이 들어간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곡동, 춘의동에 있습니다. ○ 농사 안 짓는 지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지가 없는 동을 말합니다. 위원 위촉은 그 지역 농지의 경작자가 대상입니다. ○ 네. 그리고 구청장과 농업협동조합장이 포함됩니다. ○ 농업협동조합 기관이 소속한 소재지의 위원

○ 위원수가 줄어드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으로 위촉합니다. ○ 중1동, 상1동입니다.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상1동의 경우 타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 1명이라도 농지관리위원으로 배려하는 방안 강구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4호
의결년월일	2001. 3. 14 (제85회)

제출년월일 : 2001. 3.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임차료 상한과 관련 농지법 제25조 폐지와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농경지가 감소되어 농지관리위원수를 조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촌지도소 폐지와 중동신시가지 도시화로 농경지 감소에 따라 원미구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함(안 별표1)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운영및임차료상한에”를 “운영에”로 하고 제1조 중 “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를 “운영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요건을 갖춘 농민 중”을 “농업인 중”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서식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주소지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소지 거주기간	20 . . . ~20 . . . (년 월)
⑤ 영농기간	20 . . . ~20 . . . (년 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농지관리위원정수

(단위 : 명)

구분 구별	계	구 청 장	농업인대표위원	농업관련추천위원
원 미 구	10	1	8	1
			역 곡 1 동 2 역 곡 2 동 1 춘 의 동 3 약 대 동 2	농업협동조합 1
소 사 구	13	1	12	
			소 사 본 1 동 1 소 사 본 3 동 1 범 박 동 4 피 안 동 2 역 곡 3 동 2 송 내 1 동 1 송 내 2 동 1	
오 정 구	17	1	14	2
			성 곡 동 5 원 종 1 동 2 고 장 1 동 2 오 정 동 4 신 흥 동 1	농업협동조합 1 농업기반공사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운영에</u>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가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회의(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u>농민중</u>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u>농업인중</u>				
② 및 ③(생략)					② 및 ③(현행과 같음)				
[별표] 농지관리위원정수					[별표] 농지관리위원정수 (단위 : 명)				
구분 구별	계	구청장	농민대표위원	농업관련 추천위원	구분 구별	계	구청장	농업인 대표위원	농업관련 추천위원
	15	1	12	2		10	1	8	1
원미구			역곡1동 1 역곡2동 1 춘의동 2 약대동 2 <u>중1동 2</u> 상1동 4	농업협동조합 1 <u>농촌지도소 1</u>			역곡1동 2 역곡2동 1 춘의동 2 약대동 2 <u>(삭제)</u> <u>(삭제)</u>	(현행과 같음) <u>삭제</u>

소사구	13	1	12		13	1	12		
			소사본1동 1 소사본3동 1 범박동 4 피안동 2 역곡3동 2 송내1동 1 송내2동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오정구	17	1	14	2	17	1	14	2	
			성곡동 5 원종1동 2 고강1동 2 오정동 4 신흥동 1	농업협동조합 1 농지개발조합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기반공사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후보자 추천서								
입 차 인 대 표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현행과 같음)				
	③주소								
자경과임대 를겸한다대표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현행과 같음)				
	③주소								
자 경 농 대 표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현행과 같음)				
	③주소								
<p>위 사람은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동법 시행령 제65조 및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구 ○○동을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로 추천합니다.</p> <p>년 월 일 ○○구 ○○○○동장(인)</p>					<p>.....</p> <p>년 월 일 ○○구 ○○○○동장(인)</p>				
<p>입 차 인 대 표 첨부서류 : 후보자 임대와 자경을 겸한 대표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1부 자 경 농 대 표</p>					<p>.....</p>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 -임 차 인 대 표- 후보자 -임대와 자경을 겸한 대표- -자 경 농 대 표-	(별지 제1호의2서식)
---	---

인 적 사 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현행과 같음)
	③주 소	(전화번호:)						(현행과 같음)
	④주 소 지 거주기간	19 . . .	~19 . . .	(년 월)				④주 소 지 거주기간 20 . . .~20 . . . (년 월)
	⑤영농기간	19 . . .	~19 . . .	(년)				⑤영농기간 20 . . .~20 . . . (년 월)
	⑥최종학력	학교(졸업, 중퇴)						(현행과 같음)
	⑦주요경력							(현행과 같음)
	영 농 현 황	⑧소유농지						
(단위 : m')							(단위 : m')	
전		답	과수원	시설원예	계			(현행과 같음)
⑨임차(임대)농지							⑨임차(임대)농지	
(단위 : m')							(단위 : m')	
전	답	과수원	시설원예	계			(현행과 같음)	
⑩주재배작물							⑩주재배작물	
(단위 : m')							(단위 : m')	
작 목 명	재배작목		비 고				(현행과 같음)	